

제천시뉴제천플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85
------------------	-----

제출년월일 : 2005. 4.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뉴제천플랜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 “기획자치” “지역개발” “복지환경” “문화관광” “농림축산” 5개 실무위원회를 두어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문가의 실무적인 정책 자문과 제안이 살아 숨쉬는 능률적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 5개 실무위원회 신설(제7조)
- 실무위원회는 “기획자치” “지역개발” “복지환경” “문화관광” “농림축산” 5개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됨
- 각 위원회별로 12인 이하로 본위원회 위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실무위원 위촉
- 각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자치실무위원회”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지역개발실무위원회” 간사는 투자통상실장이, “복지환경실무위원회” 간사는 복지사업과장이, “문화관광실무위원회”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농림축산실무위원회” 간사는 농업축산과장이 됨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4. 의안전문 : 불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첨부 : 1. 기타참고자료(법령등)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동조 제2항 중 "시장이"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운영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6조 삭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자치" "지역개발" "복지환경" "문화관광" "농림축산"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은 실무위원회별로 12인 이하로 본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각 실무위원회 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소관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된자가 직무를 대행 한다.

④실무위원회는 현안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을 본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말한다)"를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간사) ①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 단, “기획자치실무 위원회”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지역개발실무위원회” 간사는 투자통상 실장이, “복지환경실무위원회” 간사는 복지사업과장이, “문화관광실무위원회”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농림축산실무위원회” 간사는 농업축산과장이 한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등 회무를 보좌한다.

제13조 제2항 중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과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효율적 기능수행을 위해 본위원회의 <u>운영위원회</u>, 소위원회를 둔다.</p> <p>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u>시장이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p>제5조 (본위원회) ①(생략) 1. (생략) 2. <u>운영위원회</u>에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p>	<p>제4조(구성) ①..... 실무위원회</p> <p>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제5조(본위원회) ①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실무위원회</u>.....</p>
<p>제6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본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한다.</p> <p>②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 한다.</p> <p>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 또는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p>④운영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사항중에서 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위원회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p>	<p>(삭제)</p>
<p>제7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주요현안 발생시 시장이나 본위원회 재적위원 1/5이상의 요구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구성하여 사업 종료 시 해산한다.</p> <p>②소위원회위원은 본위원회 위원중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p>	<p>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자치” “지역개발” “복지환경” “문화관광” “농림축산” 실무위원회를 둔다</p> <p>②실무위원회 위원은 실무위원회별로 12인 이하로 본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각 실무위원회 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소관분야의 업무를 총괄 한다.</p> <p>④ 소위원회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 한다.</p> <p>⑤ 소위원회는 목적사업인 현안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위원회에 보고 한다.</p>	<p>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관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 한다.</p> <p>④ 실무위원회는 현안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사항을 본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p>
<p>제8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간으로 한다</p> <p>제10조(회의) ① 각 위원회(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위원회별 위원장이 소집한다.</p> <p>1-2(생략)</p> <p>②(생략)</p> <p>제11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둔다.</p>	<p>제8조(위원의 임기).....(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p> <p>.....</p> <p>.....</p> <p>제10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위원회별 위원장이 소집한다</p> <p>1-2(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11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 단, “기획자치실무위원회”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지역개발실무위원회” 간사는 투자통상실장이, “복지환경실무위원회” 간사는 복지사업과장이, “문화관광실무위원회”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농림축산실무위원회” 간사는 농업축산과장이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u>위원장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등 회무를 보좌한다</u></p>	<p>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u>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등 회무를 보좌한다</u></p>
<p>제13조 ①(생략)</p> <p>②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회의참석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 ①(현행과 같음)</p> <p>②.....</p> <p><u>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u></p> <p>.....</p>

지방자치법

第15條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5 - 128호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8.

제 천 시 장

조례명 : 제천시 뉴제천플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이유

○ 뉴제천플랜위원회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5개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외부 전문가의 실무적인 정책자문과 제안을 더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개정내용

○ 현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5개 실무위원회 신설

○ 실무위원회는 "기획자치" "지역개발" "복지환경" "문화관광" "농림축산" 5개 실무위원회를 두며 아래기능을 하게 됨

- 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실무적인 보좌
-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및 정책제안

○ 각 위원회별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본위원회 위원 또는 분야 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실무위원 위촉

○ 각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자치실무위원회"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지역개발실무위원회" 간사는 투자통상실장이, "복지환경실무위원회" 간사는 복지사업과장이, "문화관광실무위원회"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농림축산실무위원회" 간사는 농업축산과장이 됨

의견제출

○ 상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29일 까지 제천시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전화번호 640-5023, FAX 640-5029)

[의견제출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